

#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16319(2021.5.21.)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중 스포츠경기(관람)장과 공연장, 목욕장업에 관한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

## 1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
## 2 적용 대상

- (대상)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\*

\*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·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,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, 호텔, 예식장,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

### <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>

- 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돌잔치전문점 ▲ 목욕장업 ▲ 영화관 ▲ 공연장
- ▲ PC방 ▲ 오락실·멀티방
- ▲ 실내체육시설 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 ▲ 실외체육시설
- ▲ 학원 등(학원·교습소·직업훈련기관(일반), 학원·교습소(관악기·노래·연기), 학원·교습소(댄스·무용), 학원·직업훈련기관(기숙형))
-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
- ▲ 유원시설(놀이공원, 워터파크) ▲ 이·미용업 ▲ 백화점·대형마트
- ▲ 종합소매업(300㎡ 이상)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스포츠경기(관람)장 등 방역수칙 신설된 시설에 관해 별첨 '기본방역수칙'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중인 경우,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가능

## 3 적용 기간

- 2021년 6월 14일(월) 0시 ~ 2021년 7월 4일(일) 24시

#### 4 방역 수칙

-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에 관한 방역수칙은 목욕장업을 제외하고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과 아래 '추가 적용 수칙'을 적용

※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\*는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\*\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
\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\*\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#### <추가 적용 수칙>

<b>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돌잔치전문점</b>	
<b>★ 추가 적용 수칙</b>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개별 돌잔치·결혼식·장례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	○(이용자) - 개별 돌잔치·결혼식·장례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준수
<b>▲ 영화관, ▲ 공연장</b>	
<b>★ 추가 적용 수칙</b>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*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	○(이용자) -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
<b>&lt;대중음악 공연 관련 추가적용 수칙&gt;</b>	
- 입장인원 제한* * 1회 공연시 최대 수용 관객 4,000명 - 임시좌석 설치 시 좌우 1m 거리두기 준수 * 임시좌석 간 좌우 1m 간격이 있는 경우, 좌석 한 칸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불요 -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	- 입장인원 제한* 준수 * 1회 공연시 최대 수용 관객 4,000명 준수 - 임시좌석 임의 이동 금지 * 임시좌석 간 좌우 1m 간격이 있는 경우, 좌석 한 칸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어 앉기 불요 -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 협조
<b>▲ PC방</b>	
<b>★ 추가 적용 수칙</b>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○(이용자)

-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	-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
<b>▲ 오락실·멀티방</b>	
<b>★ 추가 적용 수칙</b>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 * 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 * 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
<b>▲ 실내체육시설</b>	
<b>★ 추가 적용 수칙</b>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	○(이용자) 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이용 금지 - 이용인원 제한 준수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
<b>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</b>	
<b>★ 추가 적용 수칙</b>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 * 수용가능 관객의 30%(실내시설은 10%, 고척스카이돔은 20% 이내 입장) 이내 입장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 * 수용가능 관객의 30%(실내시설은 10%, 고척스카이돔은 20% 이내 입장) 이내 입장 준수
<b>▲ 실외체육시설</b>	
<b>★ 추가 적용 수칙</b>	
없음	
<b>▲ 학원 등(학원·교습소·직업훈련기관(일반), 학원·교습소(관악기·노래·연기), 학원·교습소(댄스·무용), 학원·직업훈련기관(기숙형))</b>	
<b>★ 추가 적용 수칙</b>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①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고,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* ①, ②안 중 선택	○(이용자) ①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②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고,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* ①, ②안 중 선택
<b>▲ 학원·직업훈련기관(기숙형)</b>	

★ 추가 적용 수칙
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
- 숙박시설 운영 금지

\* 단,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

<학원>

① 입소자 (공통) 원칙적 외출금지,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

- (입소前)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

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: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·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, 층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샤워실·화장실 등) 소독 강화, 대면수업 금지(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)

-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

② 종사자 (공통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자가진단앱 체크

-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: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

-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: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

③ 방문자 :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, 방역수칙 준수.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, 방역수칙 준수

<직업훈련기관>

① 입소자 (공통) 외출 자제, 매일 발열체크,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

- (입소前) 2주간 예방격리 권고,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

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: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·마스크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, 층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샤워실·화장실 등) 소독 강화

-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

② 종사자 (공통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매일 발열체크,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

③ 방문자 :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, 방역수칙 준수

○(이용자)

- 숙박시설 이용 금지

\* 단,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, 이용 가능

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

★ 추가 적용 수칙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</li> <li>-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</li> <li>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</li> <li>-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, 22시 이후(익일 05시 까지) 운영 중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이용자)</li> <li>- 좌석 한 칸 띄어 앉기</li> <li>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</li> <li>-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, 준수 22시 이후(익일 05시 까지) 이용 금지</li> </ul>
<b>▲ 유원시설</b>	
<b>★ 추가 적용 수칙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</li> <li>- 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이용자)</li> <li>- 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 준수</li> </ul>
<b>▲ 이·미용업</b>	
<b>★ 추가 적용 수칙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</li> <li>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m<sup>2</sup>당 1명)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이용자)</li> <li>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m<sup>2</sup>당 1명)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</li> </ul>
<b>▲ 대형마트·백화점</b>	
<b>★ 추가 적용 수칙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</li> <li>- 시식·시음·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</li> <li>-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, 의자)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이용자)</li> <li>- 시식·시음·견본품 사용 금지</li> <li>-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, 의자) 이용 금지</li> </ul>
<b>▲ 종합소매업(300m<sup>2</sup> 이상)</b>	
<b>★ 추가 적용 수칙</b>	
없음	

## 5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**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

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**제83조(과태료)**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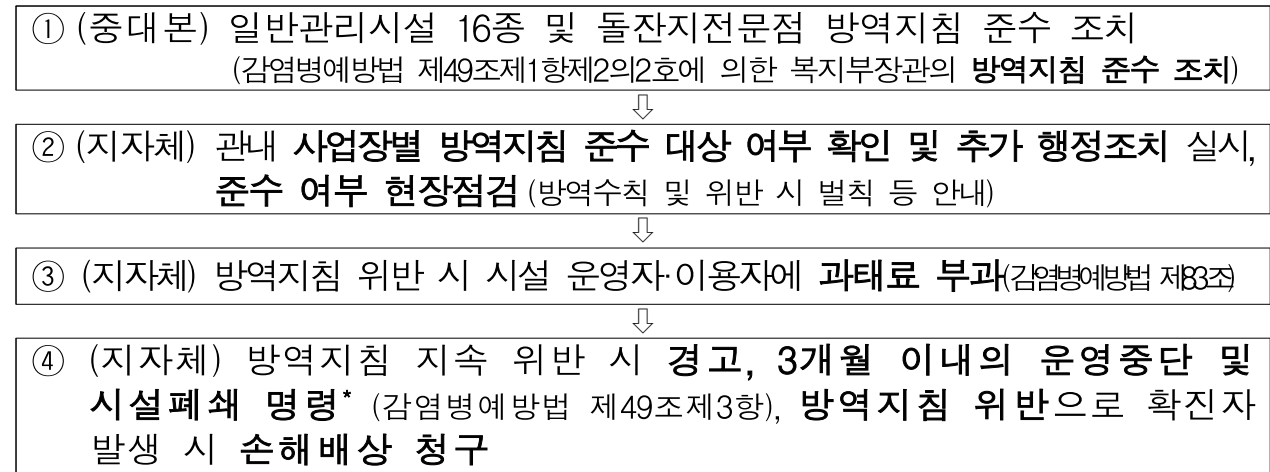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**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**6 추진내용 및 절차**



\*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, **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**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 경고·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,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 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.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-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
\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

-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# 참고1

## 목욕장업 방역지침

### □ 목욕장업(수도권)

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(세신사, 이발사, 매점운영자, 관리직원 등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(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)</li> <li>* 예방접종 완료자(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)는 전수검사 대상에서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용자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*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고령자,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본인확인(신분증 제시)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</li> <li>* <b>성년 보호자</b>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* 게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감기몸살,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(강력 권고)</li> </ul> </li> <li>▶ '달 목욕(정기이용권)' 신규발급 금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다만, 횡수권 할인구매는 가능</li> <li>* 예방접종 완료자(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)는 신규발급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시간 1시간 제한(강력 권고) 및 안내판 게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이·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</li> </ul> </li> <li>▶ <b>공용물품 사용 시 아래사항 준수 안내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음료컵: 사용 금지</li> <li>- 평상: 2m(최소 1m) 간격 유지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1인용: 2m(최소 1m) 간격 배치</li> <li>*다인용: 2m(최소 1m)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구분막, 구분선 설치, 손소독제 의무 비치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▶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(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)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, 소독대장작성)</li> <li>▶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*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고령자,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본인확인(신분증 제시)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</li> <li>* <b>성년 보호자</b>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▶ 감기몸살,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(강력 권고)</li> <li>▶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(강력 권고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이·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</li> </ul> </li> <li>▶ <b>공용물품 사용수칙 준수</b></li> <li>▶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</li> <li>▶ 목욕실,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</li> <li>▶ 이용인원 제한 준수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</li> <li>▶ 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제한 준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(최소1m)거리두기</li> </ul> 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</li> <li>▶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에는 시설 이용 금지</li> </ul>



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찜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</li> <li>▶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▶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</li> <li>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</li> <li>* 예방접종 완료자(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)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(7월부터)</li> </ul> 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·물·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▶ 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* 게시 및 안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(최소1m)거리두기</li> </ul> </li> <li>▶ 샤워시설, 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</li> <li>▶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</li> </ul>	

## 참고 2 질의응답(목욕장업)

### 1.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불가능한 이용객에 대한 조치 사항은?

- 스마트 핸드폰으로 확인 가능한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 작성이 어려운 목욕장 이용객에 대해서는
  - 우선, 일반폰으로 가능한 '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\*'을 통해 목욕장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,
    - \*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하여 전화한통으로 출입인증을 하는 출입관리방법으로, 각 기관·시설별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ARS시스템에서 방문등록이 완료
  -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확인(신분증 제시) 후에 수기명부를 추가 비치하여 운영
  - 아울러,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
### 2.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 조사가 실제 가능한지?

- 일부 지자체는 이미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 조사 중이며,
  - 향후 시행할 지자체는 예방접종, 확진자 발생 등 검사능력을 감안하여 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해당지역 한국목욕업협회(지회) 협조 하에 지체없이 실시
    - \* 검사는 종사자(세신사, 이발사, 매점운영자, 관리직원 등) 및 영업대표자 포함

### 3. 공용물품 사용 및 사적 대화금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?

- 공용물품 음료컵은 금지되며, 평상은 거리두기 조치 하에,  
나머지 공용물품은 수시로 표면소독 하에 사용
  - 1인용 평상은 2m 간격(최소 1m) 배치, 다인용 평상은 이용자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구분막 또는 구분선을 설치하고 손소독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함

- 사적 대화금지는 종사자의 방역준수사항 고지 및 업무사항은 가능하며, 종사자·이용자 사이의 사적인 대화가 금지됨을 의미함

4. 목욕탕 1시간 이내 사용에 있어 강력권고 조치 범위는?

- 목욕탕의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위험도가 높아져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지켜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것이며,
  - 이러한 권고문을 목욕탕 입구 등 여러 곳에 게시하여 목욕탕 등의 이용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

5. 달목욕(정기이용권)의 범위가 달 이외 판매하는 이용권도 해당 되는 것인지?

- 정기이용권은 기간에 상관없이 신규 발급이 금지되며,
  - 다만, 정해진 일수(개월단위, 주일단위 등) 안에 반드시 소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, 횡수권 할인판매는 가능